

원유가격 인상과 낙농진흥법 개정논의 전말과 의미

김 성 훈
농어민신문 축산부 기자

사료값 인상과 원유 가격

올 초부터 국내 낙농업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원유가격 인상문제는 축산물 조사방식 개선은 물론 낙농가 소득보장을 위한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새로운 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원유가격은 낙농가들에게 있어 생계유지와 소득확보의 가장 기초적인 좌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WTO(세계무역기구) 출범에다 물가상승을 비롯한 생산비

증가등으로 내재된 양축불안이 우리 낙농가들의 지속적인 생업유지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비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배합 사료가격이 두차례 걸쳐 인상이 이루어져 농가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웃 일본 낙농가들에게도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한 실정이다. 일본은 자국의 낙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비 절감을 최

우선 과제로 삼고 국내에서 사료비 인상설이 꾸준히 나돌던 지난해 하반기 오히려 사료값을 내리겠다는 인상적인 조치를 강행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낙농가들의 자가혼합(TMR) 사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TMR원료용 옥수수에 대한 관세율 0% 적용을 단행했다는 의신도 있었다.

어쨌든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 7월 1일 연속 약 11%의 사료값 인상조치는 그동안 농가를 괴롭혀 온

유제품 수입물량 증대, 소값 폭락 우려와 맞물려 우리 낙농가들의 최대 관심사로 자리잡게 된 것은 필연적인 결과로 비쳐지고 있다.

원유 가격 인상주진 경위

우리나라 낙농가들의 원유가격 인상논의의 발단은 여기에서부터이다. 우선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낙농의 모태로 여겨지고 있는 서울 우유협동조합의 사료값 인상 철회 건의가 농림수산부, 재정경제원에 도착했다. 그러나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우유조합 대의원회(회장 : 강석근)는 이에 따라 지난 3월 3일 농림수산부와 재경원에 원유가격 인상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또한 이사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5월 29일 '원유가 인상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원유생산비 조사작성에 돌입했다.

당시 원유가격 상승은 유업체의 제품가격 인상의 빌미를 제공할 뿐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상황이어서 그다지 설득력 있게 수용되지 못한 상태였다.

이때 원유가격 인상 논의에 불을 당기게 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다른 아님 사료값 재인상이 한국사료협회 회장자리를 놓고 사료업계와 농림수산부 사이에서 암암리에 약속됐다는 것이다. 이같은 묵계가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축산업계가 발칵 뒤집혀 졌다. 묵계는 진위 여부를 따지는 논란이 거듭되면서 차츰 현실화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일부 사료업체들이 지난 6월 20일

경 기습적인 사료값 인상을 단행 갈등이 고조돼 갔다.

설상가상으로 사료값 인상이 지역 농민들의 표를 의식, 지방자치 선거 실시 이후 본격화될 것이라는 축산업계의 예측을 증명이라도 해보이듯 7월 1일을 기해 일제히 재인상이 단행했다.

사료값 재인상은 낙농가들을 더욱 자극시켜 원유가격 인상 움직임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우유생산비 협회 16.62% 인상, 서울우유조합 16.58% 인상, 축협중앙회 3% 하향 산출

원유가격 인상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에 즈음해 한국낙농육우협회는 7월 12일 '원유가 인상 소위원회'를 소집하여 16.62%를 공식적인 인상을 확정 전의하기에 이르렀다.

협회측 원유가격 인상을 산출에 따르면 kg당 우유생산비는 4백77 원87전 협회는 특히 유지율 3.4% 와 3.7%를 기준으로 명확한 생산비 차액을 분석해 낼 수 없다고 판단 4백76원을 농가의 경영보상비가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고 '93년 6월 원유가격 조정 당시 기준가격 3 백94원(4등급, 유지율 3.4%) 대비 16.62% 인상 요인이 있다고 발표했다.

협회 소위원회의 공식적인 원유 가격 인상폭이 제시된 가운데 이번엔 축협중앙회가 계산한 '94년도 우유생산비가 3%가량 하향산출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생산비 부담

이 더해만가는 낙농가들의 게센 반발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축협중앙회 우유생산비 하향산출 논란은 사료값 상승에 따른 낙농가들의 원유가격 인상요구와 맞물려 국내 낙농산업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됐다. 축협중앙회 조사부는 당시 우유생산비 하향산출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이를 극구 부인했으나 7월 18일 공식발표를 통해 실제로 확인됐다. 축협중앙회는 특히 '94년('93년도 생산비)부터 산출방식을 달리 적용 과거에 비해 생산비가 상당폭 절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테면 자본평가액에서 2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가축자본액 산출시 지난 '93년('92년도 생산비)까지 '초산우의 최근 3개년 산지 평균가격'만을 적용해 왔으나 작년부터 산지평균가격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 생산비용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계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고정자본 이자율도 축협 대출금리에 맞춰 기존 10%에서 8.5%로 낮춰 적용한데다 자가노력비를 실제보다 감축시켜 마치 국내 낙농경영비용이 절감되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생산자단체 사이에서 떠들던 우유생산비 하향 산출설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낙농가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축협중앙회가 원유가격 인상의 절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농가들의 비난이 거세게 일었다.

일선 낙농가들로 부터 우유생산비 산출근거에 대한 항의가 줄기차

게 제기되자 축협중앙회는 “축산물 생산비조사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랐을 뿐”이라며 해명하는 데 급급해 했다. 더욱이 일부 낙농가들 사이에선 UR협정 타결과 관련 정부가 낙농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비 절감의 목표를 2001년 264원으로 설정해 놓은 것과 관련 생산비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축협중앙회 우유생산비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중앙회가 지난해부터 우유생산비 산출에 필요한 표본농가 추출 시 영세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실제보다 대폭 줄인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생산비 하향 산출의 주된 원인으로 대두됐다.

중앙회 표본추출 영세농가 크게 축소

축협중앙회 조사부가 집계한 94년도 우유생산비 표본농가분포에 따르면 10두미만 9개농가 6.62%, 10~29두 1백4개 농가 76.47%, 30두이상 23개 농가 16.9%로 알려졌다. 반면 농립수산부가 93년 9월 현재 집계한 사육규모별 낙농가수에 의하면 10두미만 영세농가수는 전체의 22%를 차지, 축협의 우유생산비 산출시 반영하고 있는 6.62%와는 큰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10두 미만 농가들의 kg당 평균 우유생산비가 4백29원인데 반해 10~29두 규모 농가들의 생산비는 3백99원, 30두 이상 생산비는 3백62원으로 나타나 규모별 생산비 격차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그럼에도 불구 10두 미만 표본농가수를 줄여 계산할 경우 평균 생산비를 실제보다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축협중앙회의 우유생산비 조사 대상 농가 선정에 있어 10두미만 농가수 하향조정현상은 작년부터 심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93년도 우유생산비 산출시 10두미만 표본농가비율은 실제 농가 분포에 비해 12%가량 적은 8.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축협중앙회는 또한 91, 92년도 우유생산비 산출시 10두미만 사육 농가의 18%를 반영했으나 '93년부터 우유생산비 산출방식 변경과 함께 영세농가에 대한 생산비 산출비중을 낮춰 조정, 의도적인 생산비를 하향 산출 의혹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원유가격 인상문제가 우유생산비 하향산출 논란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서울우유협동조합은 7월 24일 현행 기준 원유가격 3백94원에 우유생산비

인상폭 16.58%를 반영 4백59원을 최종 원유가격 조정안으로 합의했다.

서울우유 낙우회연합회 및 대의원회는 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축협중앙회 항의방문을 계획하게 되고 8월4일 송찬원 축협중앙회장을 만나 서울우유 조합총 입장을 공식 전달하게 된다. 이날 면담에서 서울우유 대표단은 축협중앙회의 공식적인 인상안을 요구했으나 송회장은 “현재 작업중이다”라고만 답변 직접적인 인상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축협중앙회 축산구조개선2부가 이미 두 차례 결친 배합사료 인상율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던 '94년도 ('93. 10~'94. 9)의 생산비 3백57원(유지율 3.4%)을 기준으로 삼아 실제 생산비는 '93년 6월 대비 오히려 줄어들어 생산비 하락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 자칫 잘못하면 원유가격 인상의 타당성 확보마저도 불투명한다는 비난을 감수해야만 했다.

축협중앙회는 또한 91, 92년도 우유생산비 산출시 10두미만 사육 농가의 18%를 반영했으나 '93년부터 우유생산비 산출방식 변경과 함께 영세농가에 대한 생산비 산출비중을 낮춰 조정, 의도적인 생산비를 하향 산출 의혹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축협중앙회 원유생산비 낙농 구조 반영 못해

원유가격 인상이 국내 축산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가운데 8월 15일 서울우유 대의원회장과 낙우회연합회장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낙농지도자 10여명은 원유가격 인상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24일 축협중앙회 항의방문을 공식 결의 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됐던 축협 우유생산비 표본농가 추출의 문제점을 중앙회측에 서면 질의하게 된다. 협회는 16일 중앙회 조사부를 상대로 표본농가 추출시 실제농가 분포도를 무시한 채 규모화된 농가들을 중심으로 생산비를 계산 축협 중앙회의 우유생산비가 하향산출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중앙회 조사부는 이에따라 지난 19일 서면답변에서 평균 우유생산비는 사육규모별 농가별 단순평균치가 아닌 사육규모별로 표본농가 수와 성우환산두수를 감안한 가중평균치라고 밝히고 사육규모별 농가분포가 아닌 두수구성비를 따져 오히려 높게 산출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축협중앙회 생산비 조사는 표본추출시 사육규모보다는 경지율 농가율, 담(畜)율에 근거 표본농가를 추출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사육규모별 두수구성비로 조사대상 농가선정의 타당성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농림수산부의 축산물 생산비 조사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한 서울대 통계연구소는 이와관련 ▲축종별

예산 농가변동오차(CV) 최소화

▲규모별 축종별 최소 조사 농가수 확보 ▲농가수를 기준으로 표본추출하돼 마리비율을 규모에 따라 증가시켜 가능한 많은 두수를 조사에 포함시킨다는 원칙하에 동등분배법을 활용 최종 표본농가수를 산출해 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10두 미만 61호 21.3%, 10~29두 1백 30호 45.3%, 30~49두 58호 20.2%, 50두이상 38호 13.2%로 우유생산비 조사표본이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표본 선정은 축협중앙회

영세농의 경우 기장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전업규모 농가들은 세무자료 노출을 우려 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서 비롯됐다"며 정확한 생산비 산출을 위한 표본농가수 확대 조정을 추진했으나 정부 예산 삭감으로 여의치 않았다"고 해명했다.

중앙회 생산비 조사가 농가들의 허술한 기장작성과 생산비 조사에 대한 인식결여, 정부의 무관심이 빚어낸 부실조사로 판명됨에 따라 원유가격 인상을 책정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신빙성을 상실했

축협중앙회가 '94년도 생산비 산출시 이용한 표본농가분포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축협중앙회가 사용한 표본농가분포에 따르면 10두미만 6.62%, 10~29두 76.47%, 30두 이상 91%에 그치고 있는데다 사육규모별 두수구성비도 10두 미만 2.73%, 10~29두 69.21%, 30두 이상 28.06%로 나타나 국내 낙농구조와 부합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 '94년도 생산비 산출시 이용한 표본농가분포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축협중앙회가 사용한 표본농가분포에 따르면 10두미만 6.62%, 10~29두 76.47%, 30두 이상 91%에 그치고 있는데다 사육규모별 두수구성비도 10두 미만 2.73%, 10~29두 69.21%, 30두 이상 28.06%로 나타나 국내 낙농구조와 부합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축협중앙회 조사부는 이에대해 "10두 미만과 30두 이상 규모 농가 표본수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은

다.

축협중앙회 우유생산비 산출의 문제점이 낱낱이 드러난 가운데 한국낙농육우협회와 서울우유가 제시한 원유가격 조정안은 산출된 생산비를 유지율 3.4%로 단순 환산하고 별도의 적정이윤 개념을 도입한 중앙회 방식과는 달리 낙농가들의 경영보상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3.4%로 환산치 않은 생산비를 원유가격 인상폭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재생산만을 염두에 둔 생산비 위주의 원유가격 설정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원유가격은 확대재생산을 도모할 수 있는 낙농가 목표소득을 근거로 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생산비에 농가 수취가격을 맞추는 현행 원유가격 조정방식에 대한 개선이 촉구됐다.

전국 2천5백여명의 낙농가 축협중앙회 항의 방문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낙농가들이 8월 24일 전국 규모의 항의집회를 계획하자 안덕수 농림수산부 축산국장은 18일 낙농지도자들과 긴급 면담을 주선하고 “원유가격을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안국장은 이 자리에서 “낙진법이 개정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원유 가격을 자율화하겠다”고 밝히고 “축협 생산비와는 별도로 원유가격 인상폭을 산출하는 것은 물론 생산비가 반드시 원유가격 설정의 잣대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농림수산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전국 낙농가 축협중앙회 항의 방문은 예정대로 진행됐고 지난 8월 24일 전국 낙농가 2천5백여명이 축협중앙회를 방문, 낙농육우협회 원유가 인상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원유가격 16.62%(유지율 3.4% 기준)를 공식적인 단일안으로 도출했다.

송찬원 회장은 이날 집회에 참석한 낙농가들에게 물의를 일으킨 축협 축산물 생산비 전면 재조사와 책임자 인사위원회 회부, 낙농진흥법의 강력한 개정 추진, 생산자단



지난해 사료가격 인상으로 인해 촉발된 낙농가들의 원유가격 인상 요구를 둘러싼 논란은 8월 24일을 기점으로 일단락지어진 셈이다. UR협상관련 농민시위가 극에 달했던 지난 '93년말 아래 최대의 농민집회로 기록될 24일 전국 낙농가 축협중앙회 항의 방문은 우리 농업의 주인이 농민임을 다시금 깨닫게 했다는 점에서 국내 낙농사에 잊혀지지 않을 부분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체 공동이용 혼합사료 생산 지원을 공식적으로 약속했다.

지난해 사료가격 인상으로 인해 촉발된 낙농가들의 원유가격 인상 요구를 둘러싼 논란은 8월 24일을 기점으로 일단락지어진 셈이다. UR협상관련 농민시위가 극에 달했던 지난 '93년말 아래 최대의 농민집회로 기록될 24일 전국 낙농가 축협중앙회 항의 방문은 우리 농업의 주인이 농민임을 다시금 깨닫게 했다는 점에서 국내 낙농사에 잊혀지지 않을 부분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인상된다 할지라도 원유가격 자율화가 단행될 경우 업체가 반드시 이번 인상을 준수해야 할 의무는 없어진다.

정부 가격통제는 여러가지 부작용을 유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때문에 원유가격을 자율화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당연한 조치일련지도 모른다.

14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농림수산부는 그 어느 때보다 낙진법 개정에 적극적이다. 원유가격 자율화에 슬기롭게 대처 생산자가 공동으로 가격협상력을 지닐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자 불의와 당당히 맞서 요구를 관철시킨 우리 2만여 낙농가들에게 찬사를 보낸다.

원유가격 인상을 둘러싼 지난 8개월간의 논란은 우리 농업의 주체가 농민이고 농민의 입장과 현실을 고려한 농정 수행과 협동 조합의 책무를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됐다.

이번에 보여준 낙농가들의 단합

된 의지는 국내 축산관계자들 마음 속에 길이 남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낙농진흥법 개정 원유 가격부동제 부작용

원유가격이 일단락된 가운데 이제 낙농진흥법 개정이 또 다시 국내 낙농산업의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으나 올해 정기국회에서 마저도 법개정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낙진법은 지난 67년 제정 이후 국내 낙농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에 부합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그동안 원유 생산 및 소비가 크게 늘어났고 젖 소 사육 농가수와 마리수가 급격하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없이 원유공급 과잉과 부족을 반복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원유가격을 정부가 통제함에 따라 여러가지 부작용이 초래됐는데 오랫동안 가격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형성되지 못해 계량 분석을 통한 수급추정시 주된 변수로 활용되고 있는 가격 변동폭을 제대로 산출하기 어렵다는 국내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국내 원유수급 추정은 계량 모델을 활용한 과학적인 접근보다는 일부 관계자들이 맞춰 떼려잡는 주먹구구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내 연구기관과 생산자단체의 유제품 수입 확대에 따른 국내 원유 수급 변화 측정이 명확하게 이루어

지지 않은 주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수입자유화 추세에 맞춘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다 줄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설상가상으로 생산자들의 뜻인 원유가격은 정부가 통제하고 제품 가격은 유업계와 유통업체 임의대로 설정케 함으로써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비 절감 부담이 낙농가들에게만 주어지는 불합리한 가격구조 개선도 담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정부 가격통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포획현상 즉, 생산가공 유통단계중 어느 일정부분의 가격을 통제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윤을 특정인이 가로채가는 부조리가 만연하고 있으나 과거에 얹매여 있는 현행법으로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60년대 국내 낙농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현행법은 수입자유화, 유통구조변화, 생산 및 소비규모 확대에 전혀 대응치 못하는 있으나 마나한 법임은 눈 뜯 장님도 알 수 있는 평범한 논리이다.

낙진법 개정 자연의 회생자는 낙농가

문제는 이같은 제도적 미비의 회생자가 다름아닌 낙농가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값싼 유제품을 수입, 가공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유업체들로선 국내 원유 수급 악화에 따른 경영손실이 과거에 비해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다. 더구나 유업체들이 최근 이윤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백색시유 생산보다는 가공유 유가공품 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급불안 발생시 일차적인 피해는 농민의 뜻임을 뒷받침 해 주고 있다.

낙진법 개정안의 주된 골자는 원유수급의 안정과 수급변동에 민감한 낙농가들의 소득보전이다.

이에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원유공급과잉에 의한 농가 손실과 원유부족에 따른 유업체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원유 수급을 충괄적으로 관리 담당하는 낙농진흥회를 설립 원유가격 자율화와 수급불안의 폐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낙농진흥회 설립은 국내 원유

정부 가격통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포획현상 즉, 생산가공 유통단계중 어느 일정부분의 가격을 통제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윤을 특정인이 가로채가는 부조리가 만연하고 있으나 과거에 얹매여 있는 현행법으로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수요의 절반가량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유업체들을 생산자 단체들과 한데 묶어 총괄적인 수급관리를 기울여 나간다는 점에서 절대 필요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만약 생산자 유업체 어느 한쪽이 진홍회에 참여치 않을 경우 낙진법 개정과 진홍회 설립은 당초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반쪽의 조치임은 거듭 강조해도 모자란 감이 적지 않다.

진홍회 설립 '뜨거운 감자'

그런데 우유수급을 총괄, 주도권을 행사하는 진홍회 설립과 위원구성을 둘러싸고 엄청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축협중앙회가 그동안 보여준 이에대한 입장은 진홍회 설립으로 지역 낙농관련 33개 조합에 대한 기득권을 상실할 것을 우려, 법개정을 반대하고 있다는게 낙농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더욱이 이같은 사실은 지난 3년 전 당시 중앙회 사업본부장이었던 서기상 현 한국축산무역 상무이사가 강성원 전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에게 실토함으로써 실제로 확인됐고 지난 8월초 중앙회 축산구조개선2부 관계자들이 법개정 의견 수렴을 충남지역 11개지역 조합에 한정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거센 항의에 직면한 것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여기에 물류의 요충지라는 잇점으로 유업체가 난립 전국에서 집유 혼란이 가장 심각한 충남지역 조합들이 다수의 유업체들을 상대로 납유계약상의 협상우위를 적극 활용

낙진법이 개정될 경우 진홍회가 직접 유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기 때문에 충남지역 조합들은 원유 판매에 대한 자체 조합의 해제모니를 상실할 수 있다고 판단 법개정을 극렬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지역 조합의 법개정 반대 움직임은 당시 아산지역 출신 황명수 민자당 사무총장을 앞세워 국회내에서의 법개정 논의를 가로 막았다.

해 받아낸 조합당 많게는 15억 상당의 계약보증금 환불 문제도 낙진법 개정을 반대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낙진법이 개정될 경우 진홍회가 직접 유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기 때문에 충남지역 조합들은 원유 판매에 대한 자체 조합의 해제모니를 상실할 수 있다고 판단 법개정을 극렬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지역 조합의 법개정 반대 움직임은 당시 아산지역 출신 황명수 민자당 사무총장을 앞세워 국회내에서의 법개정 논의를 가로 막았다는 이 지역 조합원들의 중언으로 이를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낙진법은 왜 개정돼야 하고 진홍회 설립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인가.

우선 우유는 부패성이 강하고 장기간 사육후 출하하는 육류와는 달리 제품 싸이클이 빠르며 매일 집유 운송 가공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수급상황이 매일 변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낙농이 농민들의 소득산업으로 매력을 느끼게 하는 점도 매달 두번씩 지급되는 유대로 자금순환이 원활하다는 점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이다. 농축산물은 마음만 먹으면 무한정 생산하는데 제약이 뒤따르지 않는 공산품과는 달리 기상여건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수요변화에 따른 생산물량 조정이 여의치 않다. 더욱이 매일 매일 생산해서 운송 가공되는 원유 수급은 변화무쌍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원유수급을 적절히 예측 조절할 수 있는 토대조차 마련되지 않아 해마다 원유 수급을 놓고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지난 91년 이래 UR협상 등 유제품 수입물량 확대에 따른 원유공급 과잉등 농가 손실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됐으나 지난해 폭염여파로 다행히 원유공급과잉과 같은 최악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반면 원유물량 감소로 인한 집유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도 커다란 원유수급의 차질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충남지역 조합들은 앞으로 더 이상 공급과잉은 나타날 가능성이 없다고 진단하고 낙진법 개정을 통해 오히려 지역 조합의 유업체를 상대로 한 협상력 만 위축시킨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유제품 수입물량 확대는 유럽 등 선진국들의 UR이행계획서에 나타난 보조금 감축이 마무리 돼 선진국들의 가격경쟁력 확보가 이뤄지는 5~6년 이후 본격화 될 것이라는게 공통적인 분석이다. 또 한 부실한 원유수급 통계자료 등으로 인해 한치 앞 원유수급 추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떻게 원유수급 과잉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들 충남지역 조합들은 지속적인 조합원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점을 들어 공급과잉의 가능성에 회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탈하는 농가들에게 믿고 생산할 수 있는 체계구축을 비롯한 낙농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인지 대규모 낙농가 도산사태를 점 치면서 원유수급상에 문제는 없다고 관망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인지 되묻고 싶다.

선진국 제도적 기반 확충, 다양한 정책구사

어쨌든 미국의 우유판매명령(FMMO) 및 상품신용공사(CCC),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의 낙농위원회(MMB, NAMB), 일본 중앙낙농회의 축산진흥사업단 등 선진국들은 수급에 민감한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유지성장을 위해 수급총괄관리기구를 두고 있다.

이들 선진국들은 가공유원료용 원유에 대한 차등가격, 우유 퀴타제 선별설시 계절별 가격 차등적용을 비롯한 생산자와 유업체가 안정



항간에 진홍회를 비상설로 해야한다느니 상설로 하되 집행권은 축협중앙회가 가져야 하지 않겠냐는 말이 들려오기도 한다. 어떻게 진홍회를 비상설로 혹은 집행권은 주지 않고 유업체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단 말인가. 상식적으로 일을 처리해나가는 지혜가 참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정부든 국회든 간에 누구든 제도적 미비에 대한 낙농산업의 피해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적인 판매가격과 원료구매비용 설정을 위해 일부를 보조하는 부족불지불체를 시행 아기자기한 정책의 묘를 살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낙농가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적정 목표가격 정하고 이에 따라 원유가격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는 가트(GATT) 규정 11조 C항 '자국 수급조절을 위해 생산을 조절할 경우 해당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장 적절히 활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낙농가들의 공생의지가 필요

낙진법 개정이 달성되지 않아 가공원료용 차등가격제 실시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자유화를 맞이한 우리 낙농산업은 분유등 원료용 유제품 전량을 외국으로부터 들여와야 하는 불이익을 자초하고 있다. 여기에 더이상 원유가격을 정부에서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더해가는 시점에서 낙진법 개정없는 원유가격 자율화가 단행될 경우 업체 횡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다수의 유업

체들을 상대로 계약 납유에 대한 해제모니를 쥐고 있는 충남지역 낙협들만이 살아남기 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여타지역 낙농가들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다시 한번 낙농가들의 단합된 공생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유업체를 상대로 계약보증금 많이 얻는 조합장이 능력있는 조합장으로 치부되는 일이 더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14대 임시국회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자칫 잘못하면 낙진법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항간에 진홍회를 비상설로 해야한다느니 상설로 하되 집행권은 축협중앙회가 가져야 하지 않겠냐는 말이 들려오기도 한다. 어떻게 진홍회를 비상설로 혹은 집행권은 주지 않고 유업체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단 말인가. 상식적으로 일을 처리해나가는 지혜가 참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정부든 국회든 간에 누구든 제도적 미비에 대한 낙농산업의 피해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